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11
----------	------

발의연월일 : 2020. 12. 3.

발 의 자 : 윤건영 · 강병원 · 고영인
김주영 · 맹성규 · 서동용
송영길 · 오영환 · 윤영찬
이동주 · 이용빈 · 이탄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까지 전기차는 누적 11만대가 보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구입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개발과 구입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취지에 맞춰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보조금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2,092억원이 집행되었음에도 전기차 보급은 목표대수인 7.3만대의 30%인 2.2만대에 불과함. 이는 보조금 지급이 고가의 수입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상대적으로 중저가 전기차 구입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공해차 생산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의 차이가 없는 실정임. 즉, 기존에 저공해차 생산 의무를 다하고자 시설투자를 한 기업이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정이 필요함.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구매 가격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58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제1호 중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을 “구입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제1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1호·제1호의2”로 한다.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용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의 보조 및 용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p> <p>①·② (생략)</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1. 저공해자동차를 <u>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u> <u><후단 신설></u></p> <p><u><신 설></u></p> <p>2. ~ 6. (생략)</p> <p>④ 환경부장관은 <u>제3항제1호</u>·</p>	<p>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p> <p>1. -----<u>구입하는</u>----- - <u>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 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u></p> <p><u>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u></p> <p>2. ~ 6. (현행과 같음)</p> <p>④ -----<u>제3항제1호</u>·</p>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⑥ ~ ⑱ (생략)

-----.

1.·2. (현행과 같음)

3. -----

-----제3항제1호·제1호

의2-----

⑥ ~ ⑱ (현행과 같음)